



프랑스의 문화재 보호 관련법

정보신청기관 : 문화재청 정책과

I. 시작글

프랑스에서 문화재 개념은 18세기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법률가이면서 혁명사상 정치가이었던 그레구와르 신부(l' Abbé Grégoire(1750~1831))는 공공의 존경을 받는 특별한 국가적인 물품은 어떠한 개인에게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속하며, 모든 시민은 이러한 과학적, 예술적인 유물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화재에 관한 보호 개념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소유·전시하는 예술작품과 도서관에서 보관하는 고문서 등의 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다. 반면에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종교적 건물이거나 중세 봉건영지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많은 수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개인에게 전매되어 주거지, 공장 또는 가축을 위한 외양간 등으로 사용되었다.

1880년 루이 필립프 1세(Louis-Philippe Ier)

의 내부부 장관이었던 프랑수아 귀이조(François Guizot)의 주도하에 전국에 산재한 역사적인 건축문화재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조사를 통하여 우선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파괴되었거나 손상되었던 역사적인 건축물의 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호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837년 역사적 문화재에 관한 상급 위원회(La Commission supérieure des monuments historiques)가 설립되었고 1841년 손상 위협을 받는 건물의 지정에 의한 역사적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첫번째 법률(la première loi de protection des monuments historiques par le classement des bâtiments menacés)이 제정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근대적 개념의 문화재에 관한 주장적인 프랑스 법률인 1913년 12월 31일 역사적 유적에 관한 법(loi du 31 décembre 1913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나타내는 문화재를

역사적 또는 예술적인 관점에서 지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지정된 문화재의 관리·감독을 규정했다. 그 후 사학, 고고학, 과학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문화재의 정의도 확장되었고 이에 따른 문화재 관리에 관한 법률도 발전하였다. 1930년 5월 2일 법률¹⁾은 전통적인 의미의 문화재의 범주에 벽화도 포함하는 자연 유적과 역사적, 과학적, 전설적 및 풍치적인 가치를 지닌 장소까지 포함하여 이들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1913년 12월 31일 역사적 유적에 관한 법을 보완하였으며, 1941년 9월 27일 고고학적 발굴 규정에 관한 법(*loi du 27 septembre 1941 portant réglementation des fouilles archéologiques*)은 기존 문화재 보호 범위에 고고학적 발굴 장소에 관한 보호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1943년 2월 25일 법은 거석 유적, 선사 시대 유적지나 동굴 및 보호 등급화를 위해 상기 유적이 위치하거나 인접한 건물로서 유적의 보호를 위해 지정되거나 지정이 제안된 건물까지도 보호문화재 범주에 포함하여 해당 건물의 격리, 철거 또는 정화시에는 법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 전자의 법을 보완하였다. 또한 이 법은 보호 지정을 받은 문화재의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 500미터 반경의 시야 확보선의 설치를 규정했다.

1962년 8월 4일 전통적 가치를 지닌 지역의 철거에 관한 말로(Malraux) 법²⁾은 도시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전체가 보호, 복원, 또는 가치평가를 요하는 역사적, 미학적 또는 자연 환경의 성격을 가질 경우 이 건축물이 위치한 특정 도시 지역에 관한 보호를 규정했다. 그 후, 1970년대 이후, 문화재에 관한 법적 정의는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단순히 특정 건축물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과 식물·자연환경·지역 언어, 심지어는 전통 공예작업까지 보호되어야 할 문화재 목록에 포함하였다. 1979년 1월 3일 기록에 관한 법(*loi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1992년 6월 20일 납본에 관한 법(*loi du 20 juin 1992 relative au dépôt légal*), 2001년 1월 17일 예방적인 고고학에 관한 법(*loi du 17 janvier 2001 relative à l'archéologie préventive*), 2002년 1월 4일 프랑스 박물관에 관한 법(*loi du 4 janvier 2002 relative aux Musées de France*) 등이 이러한 확장된 범위의 문화재를 소개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를 규정했다. 한편 도시 계획법전(*Code de l'urbanisme*)은 L110조에서 프랑스 국토는 국가의 공동 문화재라고 규정하여 확장된 의미의 문화재에 관한 정의를 법에 포함하였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그 동안 제정, 입법화되어



- 1) Loi du 2 mai 1930 ayant pour objet de réorganiser la protection des monuments naturels et des sites de caractère artistique, historique, scientifique, légendaire ou pittoresque.
- 2) Loi du 4 août 1962 complétant la législation sur la protection du patrimoine historique et esthétique de la France et tendant à faciliter la restauration immobilière.



은 문화재에 관한 다양한 법률들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및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4년 2월 20일 쉬락 대통령의 대통령령에 의거해 현존하는 문화재 관리에 관한 모든 법률을 통합, 단순화하고 법전화한 문화재법전(Code du patrimoine)을 제정하였다. 이 문화재법은 새로운 개념의 법이 아니라 현존했던 모든 문화재 관련 법을 하나의 법전으로 통합하였으며, 이 문화재법을 통하여 문화재 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들이 보호 지정을 받은 문화재와 이런 문화재의 관리, 보호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글은 문화재법전(Code du Patrimoine)과 내용 중에 문화재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도시 계획법전(Code de l'urbanisme) 및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과 같은 기타 관련 법전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프랑스의 문화재 보호 정책 및 관련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문화재에 관한 정의 및 종류

문화재 법은 제1조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문화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문화재에 관한 정의보다 더 넓은 의미로 문화재에 관한 정의를 확장하

여 “본 법전에 의하면 문화재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에 속하며 역사적, 예술적, 고고학적, 미학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중요성을 나타내는 재화, 부동산 또는 동산이라고 해석한다”³⁾라고 규정한다.

문화재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7개의 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 : 문화재 전반에 관한 일반 규정(유통 체계, 선매권, 합법적 등록, 문화재 담당 기관)

제2권 : 기록

제3권 : 도서관

제4권 : 박물관

제5권 : 고고학

제6권 : 역사적 문화재, 보호 지역 및 공간

제7권 : 해외 영토에 관한 규정

1. 기록

기록이란 작성 날짜, 형태 및 구성 물질에 상관없이 법인 또는 자연인에 의해 그리고 모든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업무 활동의 시행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자료를 의미한다(제 L211-1 조).

공공 자료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의 활동이나 공공 서비스나 그 임무



3) Article L1 “Le patrimoine s’entend, au sens du présent code, de l’ensemble des biens, immobiliers ou mobiliers, relevant de la propriété publique ou privée, qui présentent un intérêt historique, artistique, archéologique, esthétique, scientifique ou technique.”

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법상의 기관의 업무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료이며, 공무원의 초고 및 명람도 포함한다. 민간 기록은 제 L211-1조에서 규정된 자료 중에서 상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의미한다(제 L211-4, 제5조).

개인이 소유한 역사적 기록으로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공공 이익에 합당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하에 담당 행정기관이 역사적 기록으로 지정하며, 지정을 받더라도 개인 소유 기록은 국가에 이전하지 않는다. 개인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역사적 기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 L212-15~17조).

2. 도서관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립, 지방 및 시립 공공 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a) 1급 : 문화재 지정 도서관
- b) 2급 : 정기적, 항구적인 기술 감독을 받는 도서관
- c) 3급 : 상급 기관의 제한적인 검사를 받는 도서관(제 L310-2조)

3. 박물관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 박물관은 대중의 지식 획득, 교육 및 즐거움을 위해 조직되고 공공이익을 표방하는 보관 및 전시를 위한 재화의 항구적인 수집을 행하는 기관으로 국가 소속이거나 공법상의 법인 또는 사법상의 법인으로서 비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제 L410-1조, 제L441-1조).

4. 고고학적 문화재

고고학적 문화재란 인류의 존재에 관한 유적이나 기타 관련 흔적으로서 특히 발굴이나 발견에 의한 유적의 보존 및 연구를 통해 인류 역사의 발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추적가능케 하는 고고학적 유적을 의미한다(제 L510-1조).

5. 역사적 문화재, 보호 지역 및 공간

역사적 또는 예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존이 필요한 건물은 전체 또는 부분이 역사적인 문화재로 지정되며, 이러한 건물에는 문화재로서 지정받은 거석 유적, 유사 이전의 서식지나 광맥이 위치한 토지 및 역사적 문화재 등이 위치하거나 이런 문화재에 인접한 건물로서 해당 건물의 격리, 철거, 정화 또는 평가를 위해 등급지정이 필요한 건물도 이에 포함된다(제 L621-1조). 가구나 동산의 경우,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해당 물체의 보존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역사적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다(제 L622-1조).

한편 문화재법전(제 L630-1조) 및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 제 L341-1조 ~ 제 L341-22조)은 자연 유적 및 지역의 보존이나 보호가 예술적, 역사적, 과학적, 전설적 또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인 이익을 가져올 경우 이런 자연 유적 및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런 자연 유적 및 지역은 국가, 공공 기관 및 개인 소유의 모든 유적 및 지역을 포함한다.

또한 문화재법 제 L641-1조와 도시계획법 (Code



de l'urbanisme : 제 L313-1조 ~ 제 L313-3조 및 제 L313-11조 ~ 제 L313-15조)은 특정 구역에 위치한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보존, 복원 및 평가를 필요로 하거나 해당 건물이 역사적, 미학적인 특징을 나타낼 경우 행정 기관은 건물이 위치한 구역을 보호 구역(Secteurs sauvegardés)으로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한다.

수도 및 각 지방의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문화재법은 역사적인 문화재, 미학적·역사적 또는 문화적인 동기에 의해 보호나 평가가 필요한 지역 및 공간의 주변에 해당 시위원회나 시연합 공공기관의 제안과 해당 시장 또는 시연합위원회 의장의 결정에 의해 건축, 도시 및 자연 유적에 관한 보호 지대(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 ZPPAUP)를 설치하여 해당 문화재, 지역 및 공간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 L642-1조).

III. 문화재 보호 정책

문화재법에서 정의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문화재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기록

공공 기록의 보존과 보호는 공공 이익과 법인 또는 자연인, 공인 또는 사인의 권리의 관리와 증명 그리고 역사적인 연구의 기록화를 위해 조직되어야 하며, 기록의 보존, 수집 담당 공무원의 경우 기록 내용에 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가

진다. 공공 기록의 경우 보존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해당 기록의 보존은 기록보존 기관이나 기타 해당 행정 기관의 협조하에 시행된다. 공공 열람 기간이 완료된 기록의 경우 보존 기록과 폐기 기록을 구분하여 정리, 보존한다(제 L211-1~3조, 제 L212-1~5조).

개인 소유의 역사적 기록은 문화재 지정 후 즉시 지정 효력을 발생하며, 그 기간은 무제한이고 소유주가 바뀌어도 효력은 영속적이다. 역사적 기록의 개인 소유자는 국가가 권한을 위임한 공무원의 요구시에는 기록을 공개·제시해야 한다.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역사적 기록의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국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기록 담당 행정 기관의 허가없이 개인 소유의 역사적 기록의 내용이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의 파괴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기록의 역사적 의미가 소멸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개인 소유자와 기록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합의와 본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기록을 분리·제거할 수 있다. 개인 소유의 역사적 기록의 수출은 금지된다(제 L212-17조~제 L212-28조).

2. 도서관

문화재로 지정된 시립 도서관은 시청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보호 및 운영에 관해 국가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는다(제 L310-1조).

3. 박물관

지방 자치 정부에 속한 지방 박물관은 지방 자

치 정부의 재정 및 운영지원을 받는다. “프랑스 박물관” 명칭을 획득한 지방 자치 정부의 박물관은 본 법에서 규정한 조건하에서 국가로부터 과학적, 기술적 검사를 받는다(제 L410-2조). 프랑스 박물관은 항속적인 임무 중의 하나로서 소유 수집물에 대해 보존, 복원, 연구 및 수집내용의 발전에 관한 의무를 진다(제 L441-2조). 프랑스 박물관이 소장작품의 복원을 행할 경우 본 법에서 규정한 과학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인 전문가나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이 심의를 진행한다. 소장품의 보존이나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소장품의 개인 소유자가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존 또는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 행정 기관은 프랑스 박물관 최고 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소유자에게 소장품의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를 최고할 수 있다. 소유자가 최고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담당 행정기관은 필요한 보존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특히 파손위험에 처한 소장품을 확실한 보존조치가 가능한 장소로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이전할 수 있다. 위급한 경우, 상기 최고의견이나 보존 조치는 프랑스 박물관 최고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호 및 보존조치가 확실한 장소로 소장품을 한시적으로 이전한 후, 프랑스 박물관 최고 위원회가 해당 소장품의 개인 소유자가 부과된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소유자는 이전된 소장품을 프랑스 박물관으로 다시 이전 전시할 수 있다. 개인 소유자와 국가는 상기 이전 행위로

발생한 경비를 부담하며, 이 경우 국가 부담액은 발생 경비의 50%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제 L452-1조~제 L452-4조).

4. 고고학적 문화재

공공 지원 임무에 속하는 예방 고고학은 고고학의 일부분으로서 공공 또는 민간 토목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고고학적인 유적을 적합한 기간내에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지상 또는 수중에 위치한 유적의 탐지, 보존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제 L521-1조).

예방 고고학의 진단은 행정적인 성격을 가진 국립 공공 기관이 시행하며 국가가 부과한 결정과 제한기간을 준수하며 국가가 파견한 감독관의 통제를 받는다. 해당 공공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고고학적 연구지원 능력을 갖춘 기타 법인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지방 자치 정부에 속하는 고고학 지원 기관은 지방 자치 정부의 관할 구역내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에 대해 최소 3년 동안 예방 고고학 진단 행위를 행할 수 있다. 한편 공사진행 주체와 예방 고고학 진단 담당 주체는 협약을 통해 상기 진단 행위의 기간을 결정한다. 쌍방 간의 협약이 없을 경우 국가는 가장 신속한 신청을 한 당사자가 제의하는 기간으로 결정한다. 쌍방이 결정한 기간내에 진단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진단행위로부터 도출된 의견은 유효기간의 소멸에 따라 무효화된다. 진단행위의 결론은 공사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전달된다(제 L523-1조, 제 L523-4, 제 L523-7조).



예방 고고학 발굴작업에 대해 공사 주체는 지방 고고학 지원 당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사 주체가 민간인일 경우 발굴작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를 행할 수 없으며 발굴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공사주체와 발굴담당자는 발굴작업에 관련된 비용과 발굴작업의 기한 및 기한 초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액에 관한 쌍방 계약을 체결한다. 국가는 이 계약이 본 법에서 규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쌍방 간에 체결된 계약을 승인한다. 쌍방이 발굴 작업이행에 관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국사원 명령에 의해 조직된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민간 단체에서 발굴을 행했을 경우 발굴작업에서 도출된 결과를 국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발굴작업을 통해 획득된 동산은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국가의 통제하에 놓이며, 이 통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발굴 작업이 종료된 경우, 획득된 동산 및 관련 서류는 관련된 과학적 연구가 완료되도록 담당 국립 공공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런 동산의 소유권은 국가와 토지소유자가 반반씩 소유한다. 발굴 보고서가 접수된지 1년 내에 토지소유자가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산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 동산이 발굴된 지역의 지방정부가 해당 동산의 양도를 요구하고 또 지방정부가 동산의 보존능력을 갖고 있을 경우 국가는 해당 동산을 양도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본 법전에서 규정한 소유권회복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 L523-8조~제 L523-14조).

5. 역사적 문화재, 보호 지역 및 공간

자연 유적과 보호 지정 지역은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본래의 상태나 형태로부터 파괴되거나 변형될 수 없다. 상기 지역은 새로운 전력망이나 전화망의 설치시 주거지역에서 사용되는 유기 형태의 망기술을 사용하여 19,000 볼트 이하의 전선이나 전화선은 지하에 매설해야 한다. 기술적 또는 지형상의 문제로 인해 상기 기술이 불가능하거나 지하선보다는 공중선의 설치가 해당 지역의 보호에 유리할 경우 에너지부 또는 통신부 및 환경부 장관이 합동 공포한 법령에 의거해 지하 매설을 취소할 수 있다. 어떠한 자연 유적이거나 보호 지정 지역도 해당 지역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심의없이 공공용 강제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자연 유적이거나 보호 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형태나 특성을 변형시킬 수 없다(환경법전 제 L. 341-10~제 L. 341-14).

보호 지역을 지정하는 명령은 또한 해당 지역의 보호, 보존 규정 및 이미 계획된 도시계획에 관한 재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며 보호·보존 정책의 승인시까지 재심에 들어간 지방도시계획은 변경되거나 도시계획법전 L.123-13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단순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 지역의 보호 및 보존 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정부 또는 지방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을

가진 지방간 상호협력 공공기관이 작성한다. 보호, 보존 계획에 포함된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 또는 건물외관의 파괴, 철거 또는 변형이 금지되며, 공공 또는 민간 국토개발사업의 경우 행정기관이 건물의 파괴나 변형을 명령할 수 있다. 보호지역의 보호·보존 계획은 지방 도시계획발전 계획과 국토개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상반되는 경우 도지사의 지휘하에 공공 조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호지역의 보호·보존 계획이 이런 승인을 받으면 지방도시계획은 재심 또는 수정을 거쳐야 한다. 보호지역에 관한 보호·보존계획은 또한 지역 경제에 손실을 끼치지 않거나 보호지정을 받은 삼림지역의 감소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 지방위원회의 의견과 공공 조사를 거친 후에 권한을 가진 지방간 협력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이나 지방정부의 시위원회의 심의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호·보존계획의 변경을 결정한다(도시계획법전 제 L313-1조).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행정 결정의 공포 후, 지역내의 건물을 변형하는 모든 공사는 프랑스 건물 전문 건축가의 동의를 획득한 후 도시계획법전 IV권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공고를 준수해야 한다. 공사와 보호지역에 관한 보호·보존계획이 합치했는지에 관해 프랑스 건물 전문 건축가와 건축허가를 발급한 행정기관이나 지방시정부 사이에 의견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와 보호지역에 관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프랑스 건물 전문 건

축가를 대신하여 동의를 표명한다. 즉, 프랑스 건물 전문 건축가나 해당 지방의 국가대리인이 제출한 모든 관련 서류를 참고한 문화부 장관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허가를 발급할 수 없다. 한편, 보호지역을 위한 보호·보존작업은 공공단체·개인 또는 단체를 구성한 토지 소유자에 의해 주도되어 시행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작업의 성격과 중요성에 관해 요구되는 참여행위를 규정한 국사원의 명령이 정한 조건에 따른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도시계획법전 제 L. 313-2조, 제 L. 313-3).

건축, 도시 및 자연 유적에 관한 보호 지대 (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 ZPPAUP)에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법전 L. 126-1조에서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여 지역 경제에 손실을 끼치지 않아야 하며 보호지정을 받은 삼림지역의 감소를 야기하지 않아야 하며 상반된 경우 보호지대 설정에 관한 계획을 수정될 수 있다. 보호지대내에 위치한 건물의 철거·이전, 개축 및 용도변경은 프랑스 건물 전문 건축가의 합격 의견을 획득한 특별 허가를 필요로 한다. 건축허가 및 기타 토지사용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 및 허가를 요한다. 프랑스 건물 전문 건축가와 건축허가를 발급한 행정기관이나 지방시정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와 보호지역에 관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프랑스 건물 전문 건축가를 대신하여 동의를 표명한다. 즉, 프랑스 건물 전문 건축가나 해당 지방의 국가대리인이 제출한 모든 관련 서류를 참고한 문화부 장관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허가를 발급할 수 없다. 불법 행위로 인한 보호지대의 파손이 발견될 경우 해당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사실을 확인한 후 도시계획법전 제 L. 48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고소를 하고 담당 법원은 해당 부처가 제시한 자료에 기록된 상태 또는 파손이전의 상태로의 복구를 명령한다. 한편, 1930년 5월 2일 예술적·역사적·과학적·전설상 또는 절경의 특징을 갖춘 자연 문화재와 지역보호의 재조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보호지대로 지정받은 지대는 지대의 소멸 또는 건축, 도시 및 자연 문화재 보호지대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한 보호혜택을 받는다(문화재법전 제 L.642-2조~제 L.642-4조, 제 L.642-6조).

형도 조사·습도조사 및 금속특성 조사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석재 및 콘크리트재는 구조물의 보강, 염분처리·청소·표면처리·증발억제 및 대형 석재의 장식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재의 경우, 해충방제 기술·재료의 보강과 경화기술 및 재료강화기술을 소개하고, 금속은 금속재질의 침식상태, 부식처리기술·재료간 접합기술 및 대체 금속 재료에 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호 및 복구 전문 기업정보 및 연락처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에 종사하는 전문가, 기술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IV. 문화재 보호기술 관련 웹사이트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산하 문화재 및 건축국에서 문화재 보호 및 복구 기술에 관한 과학,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재 관련 현대 기술(TECHNIQUES CONTEMPORAINES utilisées dans les MONUMENTS HISTORIQUES : <http://www.tcmh.culture.gouv.fr/>)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크게는 조사·석재와 콘크리트재, 목재 및 금속재에 따른 기술을 소개하며 조사 기술로는 컴퓨터 측정 및 조사·작업의 기계적인 항구성 조사, 음파이용조사·재질의 변

강 흥 진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